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13 선고 2023가단520986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9. 13.

주 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2]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분 5분의 2에 관하여 2019. 7. 30. 체결된
협의분할계약을 74,013,39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4,013,395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사 강정연

[별지1]

청 구 원 인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여신거래약정의 체결 및 기한이익의 상실

소외 C은 2017.07.31. 및 2018.05.21. 소외 D 주식회사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나. 원고의 채권양수

소외 E 주식회사(변경후 상호 : F 주식회사)는 2020.07.21. 위 가.항 소외 D 주식회사의 권리일체를 양수받았고, 원고는 2022.09.29. 위 소외 E 주식회사(변경후 상호 : F 주식회사)의 권리일체를 양수받았으며, 동 계약사실을 소외 조홍철에게 적법하게 통지하여 위 채권의 모든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기타 채권금액 및 어음 수표상 권리 및 기타 이에 수반하는 모든 권리가 궁극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습니다.

다. 소외 F 주식회사의 재판상 청구

소외 F 주식회사는 소외 C을 피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2021가소1524882호 및 2021가소1537819호 양수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은 위 가.항의 사실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3,574,005원 및 그 중 18,764,518원에 대하여 2020.12.0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29,737,617원 및 그 중 21,976,427원에 대하여 2020.12.0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고 판결선고하였습니다.

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그리하여 원고는 2023.06.02.기준 아래와 같은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 2017.07.31.자 대출채권

- 대출원금잔액 : 18,764,518원
- 인수시 이자잔액 : 10,118,446원
- 인수후 이자잔액 : 2,133,448원
- 원리금잔액 : 31,016,412원

2) 2018.05.21.자 대출채권

- 대출원금잔액 : 21,976,527원

- 인수시 이자잔액 : 17,877,628원
- 인수후 이자잔액 : 3,142,928원
- 원리금잔액 : 42,996,983원

3) 전체합계

- 대출원금잔액 : 40,740,945원
- 인수시 이자잔액 : 27,996,074원
- 인수후 이자잔액 : 5,276,376원
- 원리금잔액 : 74,013,395원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소외 C은 2019.07.30.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협의분할계약을 체결하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2020.07.16. 접수 제76182호로 협의분할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나. 소외 C의 무자력

소외 C은 원고에 대한 채무 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채무를 부담하고 있

는 무자력 상태에서 원고 및 다른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협의분할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행위는 본인의 무자력 상태를 더욱 악화 시킴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를 악의적으로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다. 사해의사

소외 C은 위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원고에게 대출이자금 및 원금을 갚지 못해 이미 부실채권으로 분류되어 있는 상태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소외 C이 원고 및 다른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사해의사가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피고는 소외 C과 모자관계에 있었던 점에서 소외 C의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의 악의는 법률상 추정되므로 피고 또한 사해의사가 있었음은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3. 가액배상의 청구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사해행위 이후 3번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현재 존속하고 있는 바, 이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액배상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서는 소송과

정에서 입증토록 하겠습니다.

4. 결 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협의분할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와 소외 C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C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의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별지2]

부동산의 표시

1. 부산광역시 기장군 / 대 / 94㎡

2. 부산광역시 기장군 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68.04㎡

부속, 블록조 스페트지붕단층변소 1.20㎡

